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01 국내복귀 기업이란?

| 정의 |

“국내복귀”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하위법령에 규정)

01 2년이상 해외 제조사업장 운영



해외사업장에서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또는 산업발전법상 ‘지식 서비스산업’을 2년이상 운영하였을 것

‘19년 상기내용을 반영한 법률 개정 추진중

02 해외 및 국내사업장 실질적으로 지배



해외사업장과 국내 신·증설 사업장을 운영할 신청기업의 실질적 지배자 (지분 30%이상 보유 등)가 동일할 것

선정 요건

03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생산량을 축소(25% 이상)할 것
(단, 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외사업장 유지 가능)

04 국내복귀시 해외사업장과 동일업종 운영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국내 신·증설하여 운영할 사업장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 소분류상 동일할 것

단,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혜택(조세·임대료 감면 등)을 받은 기업이 아닐 것

| 국내복귀기업 유형 |

국내	복귀유형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유형 1◦ 청산 또는 양도	신설
	유형 2◦ 사업장 유지 또는 생산량 축소	신설
기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유형 3◦ 청산 또는 양도	신·증설
	유형 4◦ 생산량 축소	신·증설

02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



| 국내복귀기업 유형별 지원사항 |

기업 유형	복귀 지역	보조금		조세		인력지원			보증·보험 우대	입지 지원	정책자금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컨설팅
		입지	설비	법인·소득세	관세	고용창출 장려금	비자 (E7)	외국인 고용우대				
중소·중견 기업	비수도권	○	○	○	○	○	○	○	○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외)	×	×	○	○	○	○	○	○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내)	×	×	×	×	○	○	○	○	○	○	○
대기업	비수도권	×	○	○	○	×	○	×	○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외)	×	×	○	○	×	○	×	○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내)	×	×	×	×	×	○	×	○	○	×	×

03 세부 지원제도

1) 입지 · 설비 보조금 지원

▣ 입지 및 설비투자에 관한 국내복귀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 완화

가. 지원 조건

- ▶ 지원대상 국내복귀 선정기업 중 지방투자보조금 고시 요건에서 규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국내 투자사업장의 신규 고용인원(상시)이 20인 이상일 것
 -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 * 단, 투자사업장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점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나. 지원 내용

- ▶ 입지, 설비 보조금 합산 국비 지원은 최대 100억 원 이내

지역 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			국가 보조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인접지역	입지	-	-	토지매입가액의 9%이내	보조금의최대 100분의4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일반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보조금의최대 100분의6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지원우대 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보조금의최대 100분의7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9%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등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50%이내	보조금의최대 100분의7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설비투자금액의 34%이내	

* 수도권 인접 지역 : 수도권과 인접한 광역시·도의 시·군

* 일반지역 : 수도권, 수도권 인접지역 및 지원우대지역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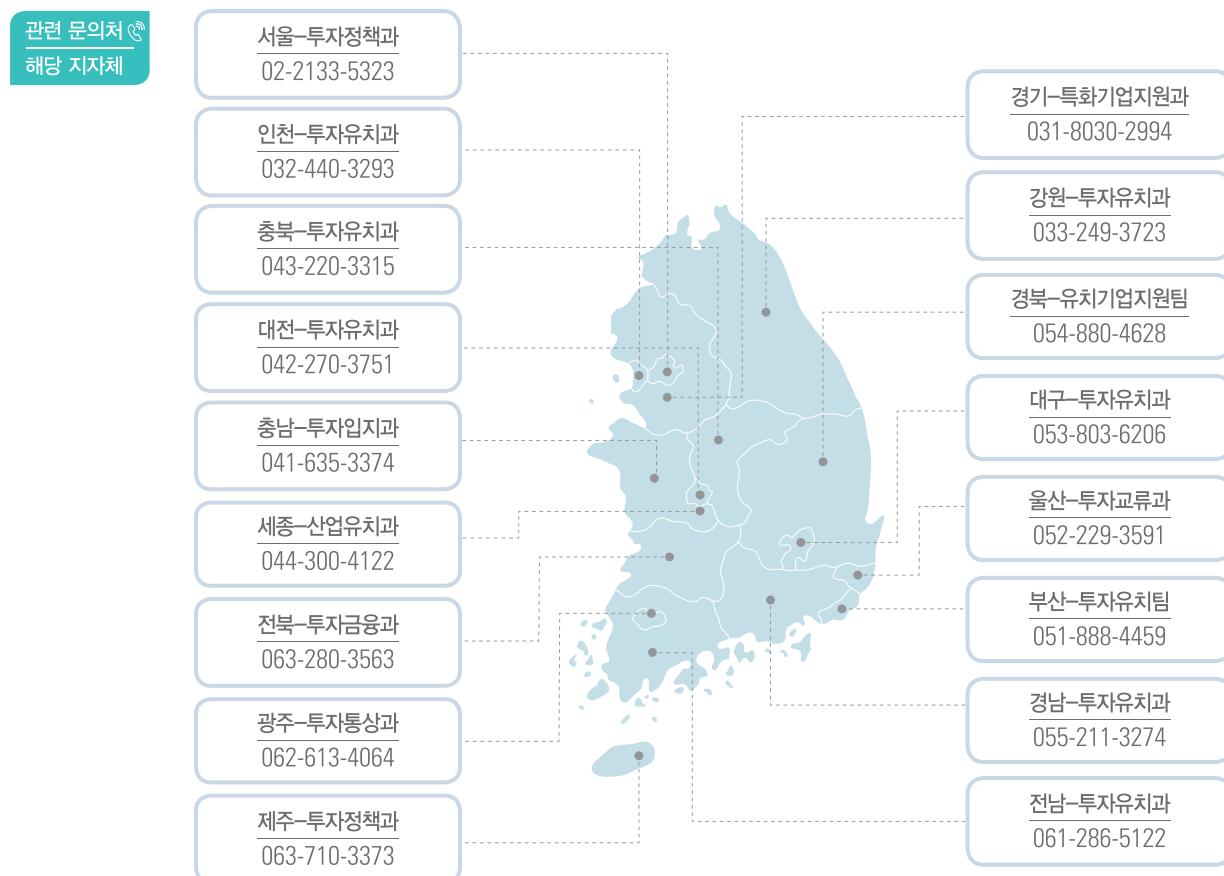
* 지원우대 지역 :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기업도시개발구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새만금사업지역, 국가산업 단지 중 준공인가 3년 경과된 분양률 50퍼센트 이하인 국가산단

*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 : 군산,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 지역 구분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사전 확인 필요

다. 신청방법 및 기한

- ▶ 입지보조금만 별도신청 불가
- ▶ 보조금 신청기한
 - 설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 입지 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지계약체결일부터 1년(단,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는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 ※ 신청기한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산업통장자원부에 최종 제출되는 기한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시간을 고려하여 신청기한 도래 전 신청 필요
- ▶ 투자완료일은 착공신고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심의원회에서 장기간 투자가 요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음.



2)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사업정착을 위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혜택 부여

가. 지원 대상

- ▶ 수도권과 밀접제권역 이외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
 -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는 기업(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단, 생산량 축소의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포함)
 - * 수도권과 밀접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신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 *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고나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 밀접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것
 - * 해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후 영위 업종이 동일할 것

나. 지원 내용

- ▶ 복귀 유형에 따라 최대 7년간 50~100%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수도권	수도권 이외
청산 · 양도	5년간 100% + 2년간 50%	5년간 100% + 2년간 50%
축소 · 유지	3년간 100% + 2년간 50%	

- ▶ 신설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세액감면

- 단,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

다. 신청시기·신청장소

- ▶ 신청시기 : 최초 소득 발생한 과세연도의 익년에 세액감면 신청
- ▶ 신청장소 :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세무서

관련문의처 ☎

국세청 126 홈페이지 참조 : www.nts.go.kr

제출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계산서
- 국외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명세 등)
- 해외사업장을 양도하였거나 폐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조세감면액의 20%로 부과되던 농어촌 특별세는 비과세로 개편중(19년 2월 일부 개편)

3) 관세감면

- ◆ 지원대상 국내복귀선정기업의 신규 또는 중고 설비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초기 국내 설비투자 부담 완화

가.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국내복귀선정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21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및 시행령 제115조 참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으로 복귀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선정기업
 - * 기존 국내사업장이 있고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지원 내용

- ▶ 복귀 유형에 따라 최대 50~100% 관세 감면

다. 관세감면 지원내용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관세감면율
청산 · 양도	신설 또는 증설	100%
축소 · 유지		50%

제출서류

- 국내복귀기업 선정 확인서 사본 1부
- 자본재 등 도입 물품 명세 확인신청서 1부
- 관세 감면 신청서
-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관련문의처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02-3460-7361~5

관세청
125

4)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

- ◆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자가 직원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가.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국내복귀 선정기업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하위 규정 참조)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고,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우선기업지원대상자 및 중견기업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제조업 500명 이하

나. 지원 내용

- ▶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규모 결정 (지원한도 100명)
 - 단,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급 (지원기간 2년)

구 분	연간 총액(월 지급액)	3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월 60만원)	180만원
중견기업	360만원(월 30만원)	90만원

관련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1350

* 매 3개월마다 신청

5) 해외인력 고용지원

5-1) 특정활동사증(E7 비자) 발급 지원

가. 신청 대상

- ▶ 지원대상 국내복귀 선정기업의 외국인 생산관리자
- ▶ 자격 요건
 - 해외현지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무
 - 학위가 없는 경우 해당 직종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분야 전문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수상경력, 관련 언론보도 또는 KOTRA 현지무역관의 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나. 지원 내용

- ▶ 국내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을 산정

관련문의처 ☎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02-3460-7361~5	KOTRA 해외취업팀 02-3460-7388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	-----------------------------	----------------------------

5-2) 고용허가제에 의한 고용허용인원 추가지원(E-9비자)

- ▣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일반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추가 고용 허가

가. 신청 대상

- ▶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상시근로자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이 80억원 미만인 기업 또는 중소기업 확인기업
 - 5억원 이상의 신규투자(토지제외)를 완료한 기업

나. 지원 내용

- ▶ 과거 1년간 내국인 고용인원 만큼 외국인근로자 추가고용 허용(50명 한도)

내국인피보험자수	기본고용허용인원	추가고용허용인원
1인 이상 5인 이하	5인	
6인 이상 10인 이하	7인	
11인 이상 30인 이하	10인	
31인 이상 50인 이하	12인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인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인	
151인 이상 200인 이하	25인	
201인 이상 300인 이하	30인	
300인 이상	40인	

과거 1년간
내국인 고용인원

관련문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1350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02-3460-7361~5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 (3개월 평균)이 1명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6) 보증·보험 지원

6-1)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가. 신청 대상

-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통해 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

나. 지원 내용

- ▶ 지원 대상 자금 : 국내 사업장 설치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운전 · 시설자금
- ▶ 보증 한도 : 적용 매출액의 1/2~1/3
 - * 적용매출액은 신용보증기금의 기준에 따른 추정매출액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추정 불가능 시 최근 1년간 매출액 또는 당기 매출액을 적용
- ▶ 보증 비율 : 90% 부분보증비율 적용
- ▶ 보증료 : 0.2%p 차감 보증료율 적용

관련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6-2) 기술보증기금 보증 지원

가. 신청 대상

-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기술보증기금 보증서를 통해 보증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

나. 지원 내용

구분	기술력 우수기업	일반기업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기술평가등급 BBB등급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
우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비율 95% 이내 • 보증료율 0.5%p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비율 90% 이내 • 보증료율 0.3%p 감면
대상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사업장 설치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운전 · 시설자금 	
추가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적용없이 지원하는 운전자금보증금액 확대 (같은기업당 2억원까지) • 국내복귀기업을 '우대보증'으로 운용하여 보증심사시 우대 	
연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ale-up 기업에 대해서 보증연계투자 우선 추천 • 국내복귀기업 스마트공장 도입시 스마트공장 지원 프로그램 우선지원 	

관련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6-3) 무역(수출) 보험·보증 지원

가. 신청 대상

-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 및 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출기업

나. 지원 내용

▶ 보증·보험료 할인

- 보험(보증)료 할인 :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선전 적, 선전 후)
보험(보증)료 20%이내 할인 및 수출신용보증(매입)
0.1%p 차감 할인
- 한도우대 :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및 수입보험(금융기관용) 책정가능 한도 1.5배 우대

관련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7) 입지 지원

가. 국·공유 재산 사용 특례

- ▶ 복귀기업의 국·공유 재산 수의계약 허용
- ▶ 최장 50년간 장기임대 허용
- ▶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 (최대 100%)

[19년 상기내용을 반영한 법률 개정 추진중]

나. 임대공장 입주 지원

- ▶ 국가산단 휴·폐업 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하는 임대공장에게 우선입주지원
 - 주변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 업무공간 이외에도 식당, 기숙사, 편의시설 등을 함께 설치하여 운영

[리모델링 완료 후 별도 입주공고 예정]

관련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000

8) 금융 지원

가. 초기 시설투자 자금지원

- ▶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활용 초기 시설투자 자금지원
 - 산업은행 · 기업은행을 통해 최대 소요자금의 80% 이내에서 시설투자 자금지원
 - * 전통 주력 산업 혁신과 신성장 분야 시설투자를 위한 금융위원회 지원 프로그램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사업재편' 분야의 '사업장 이전 및 재배치' 유형에 해당)

나. 수출촉진자금 대출 금리우대

- ▶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 시 금리 우대
 - (자금용도) 시설투자, 수출품목의 개발 또는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제작자금 등
 - (대출금액)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 (우대내용)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0.3%p 금리 우대

관련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02-3779-6114

9)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가.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한 시설·운영자금 지원 강화

- ▶ 정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 시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가점 혜택 부여
 - 자동화솔루션 구축 사업 참여 시 가점(3점) 부여 (총 사업비의 50%, 1억원 이내)
 - 제조기업 로봇도입 공정혁신 사업참여 시 가점(2점) 부여 (총 사업비의 50%, 3억원 이내)
- ▶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해 자금 대출 심사 시 부채비율 심사 면제 (45억원 한도)

10)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가점

- ▶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가점(3점) 부여

11)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

▣ 기업의 특성에 맞는 청산·매각·양도·축소 등 구조조정 모델제안 및 대행을 통해 기업의 효율적인 사업재편 지원

가. 신청 대상

- ▶ 중국, 베트남,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복귀 기업으로 승인신청 또는 승인 완료된 기업의 해외법인
- ▶ 해외사업장 청산 등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중이거나 계획서를 제출하고 향후 이행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국내복귀 미선정기업도 지원가능
 - 신청하는 모 기업이 존재해야 함

나. 지원 내용

- ▶ KOTRA 등록 컨설팅회사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이 구조조정 컨설팅을 받을 경우, 컨설팅 이용금액의 50~70% 지원
(지원한도:USD 1만/컨설팅회사에 지급)
- ▶ 구조조정 컨설팅 내용

① 구조조정모델 제안 (청산, 매각, 양도, 축소 등)	② 청산 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구조조정모델에 대한 행정절차와 업무흐름 안내 • 구조조정별 비용 추정 및 최적화 모델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적의 청산전략 및 계획 수립 • 청산을 위한 실무, 행정 업무 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 대행(동사회 소집, 채권정리 공고, 신문공고, 청산위원회 등) * 행정대행(심의비준, 등기말소 등) • 청산법무, 노무 서비스 등
③ 축소 대행	④ 매각 및 지분양도 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적의 축소 전략 및 계획 수립 • 축소를 위한 실무, 행정 업무 대행 • 축소 법무, 세무, 노무 서비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적의 매각(또는 지분양도)전략 및 계획 수립 • 매각(또는 지분 양도)을 위한 실무, 행정 업무 대행 • 매각(또는 지분 양도) 법무, 세무, 노무 서비스 등

다. 신청 시기

- ▶ 연중 상시 (단, 신청기업의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완료 이전에 신청해야 함)

관련문의처 ☎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02-3460-7361~5

제출서류

지원대상 국내복귀선정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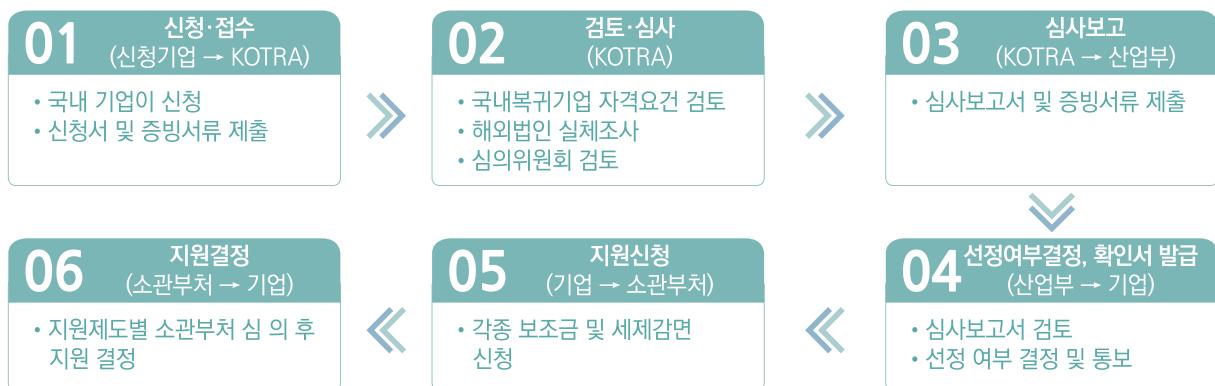
-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 국내복귀기업 선정서
- 컨설팅 계약에 관한 서류(계약서, 컨설팅 수행계획서 등)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하는 서류

기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하는 서류

- 지원대상 국내복귀선정기업 이외 기업
- 구조조정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 국내법인에 관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등)
- 해외법인에 관한 서류(영업집조, 세무등기증, 재무제표 등)
- 컨설팅 계약에 관한 서류(계약서, 컨설팅 보고서 등)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하는 서류

04 국내복귀기업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 선정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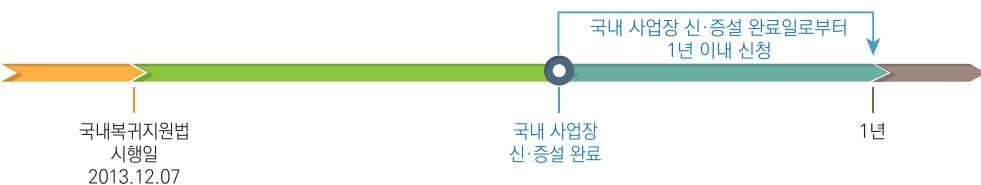


| 신청방법 및 기한 |

'19년 하기내용을 반영한 고시 개정 추진중

- ▶ 제출방법 : 신청서 원본 우편송부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스캔본 e-mail 송부
- ▶ 제출처 :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 주소 : (06792)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KOTRA 유턴지원팀
 - 문의 : 02-3460-7361~5 / sc.kim@kotra.or.kr, lyn@kotra.or.kr

①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 해외사업장 철수(청산·양도) 미완료의 경우



② 국내 사업장 신·증설 미완료, 해외사업장 철수(청산·양도) 완료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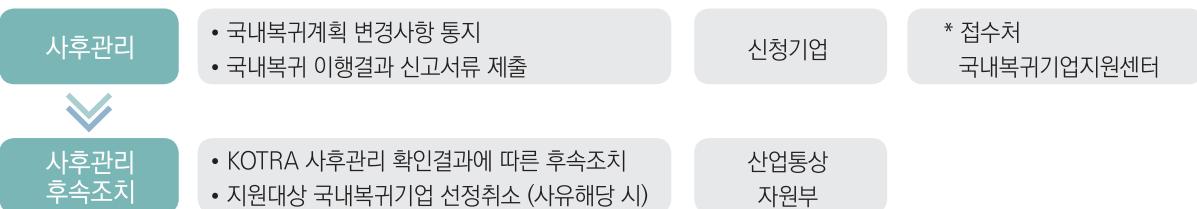


③ 신청 전 해외사업장 축소가 개시된 경우



05 국내복귀기업선정 후 사후관리 및 완료기한

| 선정이후 사후관리 |



| 국내복귀 완료기한 | [’19년 하기내용을 반영한 고시 개정 추진중]

▶ 국내사업장 신·증설 기한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 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품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서 명시한 투자완료 기한으로 신·증설 기한을 정할 수 있음

▶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기한

-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기한
 - 국내사업장 신·증설 미완료 기업의 경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일로부터 4년 이내
 -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업의 경우 신·증설 완료일로부터 4년 이내
- 해외사업장의 축소 기한
 - 신청일 까지 축소를 개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일로부터 4년 이내
 - 신청일 이전에 축소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축소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① 해외 사업장 철수 기한(청산, 양도 또는 축소)



- ① 신청 시점에 국내사업장 신·증설 미완료 기업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일'로부터 4년 이내
- ② 신청 시점에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기업은 '신·증설 완료일'로부터 4년 이내
- ③ 신청 시점에 해외사업장 축소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일'로부터 4년 이내
- ④ 신청 시점에 해외사업장 축소를 개시한 경우 '축소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 ⑤ 신청일까지 축소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선정일로부터 4년 이내
- ⑥ 신청일 이전 축소를 개시한 경우 축소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②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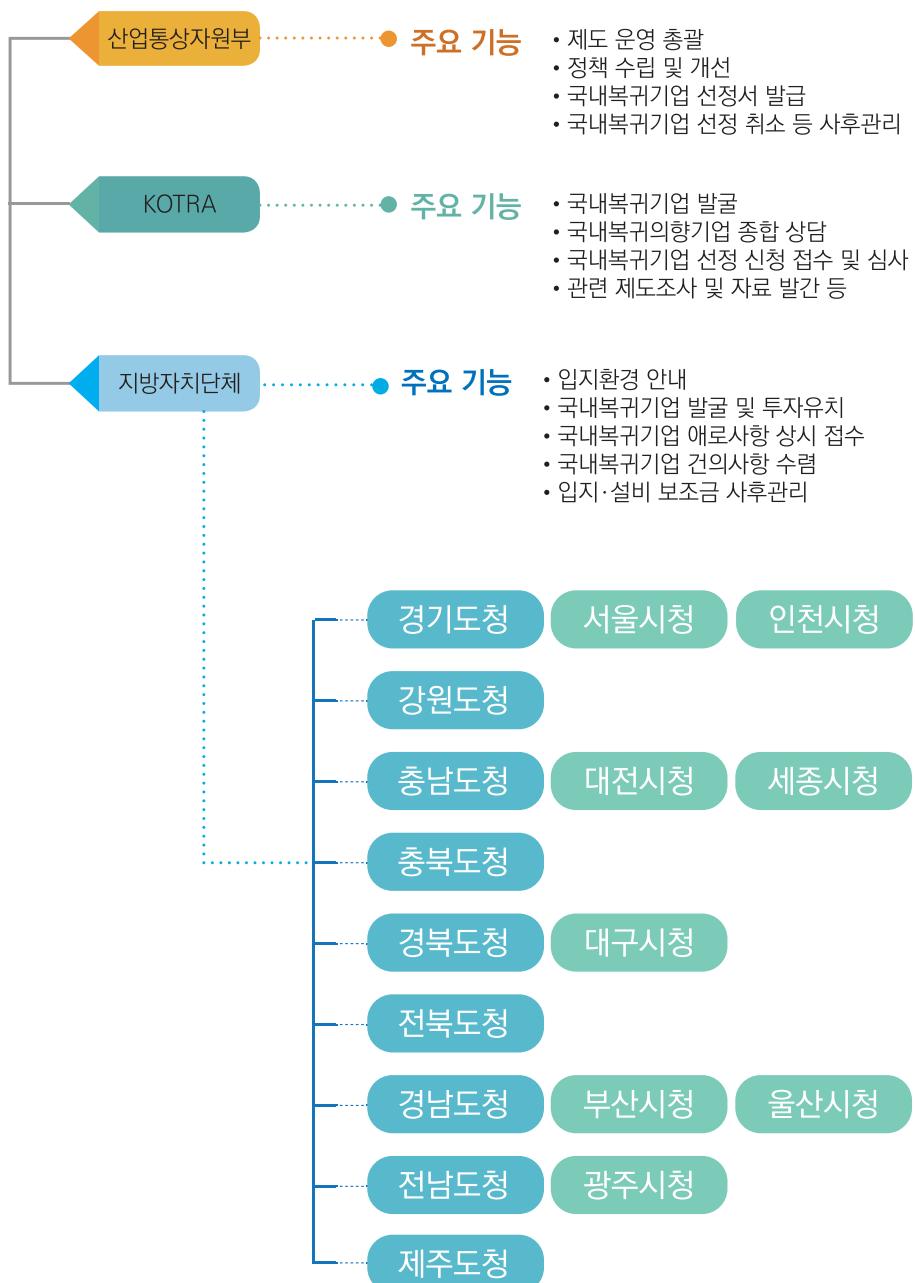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일(국내사업장 신·증설 미완료기업)

(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품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서 명시한 투자완료 기한으로 신설기한을 정할 수 있음)

06 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

KOTRA 본사의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및 해외 국내복귀데스크(현지무역관)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종합 서비스 제공

가. 국내복귀 지원 조직별 주요 기능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